

## 별첨 5

##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예외 관련 안내

### □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  - '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  
→ 장애 유형(청각) 및 정도가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 제출
  - '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사람  
→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

### □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안내

- 제출서류 : 의사진단서 원본\*(의사소견서 불인정)
  - \*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- 발급기관 :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- 의사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
  -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, 장애정도\*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,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여부
  - \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라 검사

#### 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##### 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,
-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